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3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문화관광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안설명서

설명자: 문화관광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

- 중소벤처기업부 움부즈만지원단-3404(2022.11.24.)호 「2022년도 하반기 규제 개선 이행점검」 사항에 따라
- 공공조형물 설치 시, 비슷한 심의위원회에 중복심사를 받는 현 상황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계약대상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
- 공공조형물 설치에 효율을 기하고자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2조에서는 「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여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.
- 안 제3조에서는 법률용어 정비와 관련해 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’ 를 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’로 능동형으로 수정하였습니다.
-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과정의 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11조에서는 ‘제1항’ 을 ‘제1항제1호’로 수정하여 잘못된 법조항체계를 수정하였습니다.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 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. 2. 1일부터 2.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 - 2023. 2. 28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-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
 - 공공조형물 설치 과정의 중복심사를 완화하여 계약대상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의 효율성을 높여
 -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,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30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3. 3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문화관광과장)

1. 제안이유

- 가.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-3404(2022.11.24.)호 「2022년도 하반기 규제개선 이행점검」 사항을 반영
- 나.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,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을 설치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과정의 과도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(안 제9조)
- 나. 그 밖에 부적합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함(안 제2조, 제3조, 제11조)

3.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6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마. 행정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
- 바.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사. 입법예고(2023. 2. 1.~2. 21.) 결과: 의견 없음
- 아. 조례·규칙심의회 결과(2023. 2. 28.)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) ①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공공조형물의 건립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
 2. 공공조형물의 교체 또는 해체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.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
 2. 동일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
 3.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단순 보수를 하는 경우

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“보존처리”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<p>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----- .</p> <p>----- .</p> <p>----- .</p> <p>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----- .</p> <p>----- .</p> <p>----- .</p>
<p>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</p> <p>2.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</p>	<p>제9조(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) ①</p> <p>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공공조형물의 건립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</p> <p>2. 공공조형물의 교체 또는 해체에 관한 사항</p>

3.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
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
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
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
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
2. 동일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
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
3.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단순
보수를 하는 경우

제11조(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)

- ① (생 략)
- ② 제1항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
서에는 사업의 필요성, 대상자 현
황 분석(동상의 경우), 대상지 적정
성,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
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1조(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제1항제1호-----

-----.